

이투엘보험대리점 대학생 현장실습보험 상품 안내서

# 대학생 현장실습보험 상품 안내서



- 1. 상품개발 배경**
- 2. 현장실습보험 지원시스템**
- 3. 보험상품 주요내용**
  - 상품구성
  - 보험료
  - 보장내용 설명
- 4. 상품과 연관된 주요 법규**
- 5. 자주 묻는 질문**

## 1. 상품개발 배경

### 2018.9.11 대학생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의무적용

- 산재사고시 치료비 제외되는 항목보장 및 산재초과 민사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의 필요성

### 보험업무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

#### 기존 보험상품

- 기존 단체상해보험 및 학생실습보험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보험회사에 필수 제공해야 했음.

#### 어떻게 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 사고발생시 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출석부, 업무일지 및 학교의 학생관리 전산화면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 이를 근거로 현장실습 학생의 정보가 확인되므로 개인정보를 받지 않고 보험업무를 진행하여 효율성을 제고.

### 현장실습보험 지원시스템 필요성

- 기존 보험상품의 보험가입-변경-보상 절차가 복잡하여, 대학교의 담당자가 보험에 할애하는 시간이 너무 많음.
-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업무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2. 현장실습보험 지원시스템

### 업무절차

- ① 최초 가입대학의 경우 [www.lincinsu.kr](http://www.lincinsu.kr) 접속하여 "대학교견적의뢰" 작성합니다.
- ② "대학교견적의뢰" 작성 후 기재하신 이메일로 접속 도메인주소, 아이디 및 패스워드가 전송됩니다.
- ③ 안내에 따라 로그인 후, 아래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사항

- 보험료 확인
- 견적서 수정 요청
- 보험청약서 및 계좌 다운로드
- 보험가입 후 영수증, 보험증서 확인
- 과거 가입한 보험증서 및 영수증 확인
- 보상절차 및 준비서류 확인

메인화면

#	보험기간	실습기간	인원	증권번호	보험료	상세보기	진행상태
1	2019-12-11~2020-02-01	동계계절	2		9,500	질문서	접수

로그인 후 화면

### 3. 보험상품 주요내용

#### 상품 구성

- 가입유형은 A, B로 구분되며 보상한도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장내용	보상한도	
	가입유형 A	가입유형 B
실습생의 배상책임	2억원	3억원
산재보험초과 민사상 배상책임	2억원	3억원
실습 중 상해사고 치료비 담보	1천만원	1천만원

#### 보험료 안내

- 학과,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실습기간	가입유형 A (원)	가입유형 B (원)
~4주	3,000	5,000
~8주	5,000	8,000
~12주	6,500	10,000
~16주	7,300	12,000
~20주	9,100	15,000
~24주	13,000	18,000
~26주	16,000	20,000

#### 보장내용 설명

보장내용	세부 설명
실습생의 배상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학생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li><li>학생 과실로 인한 신체적 피해</li></ul>
산재보험초과 민사상 배상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18.9.11 이후 산재보험 의무</li><li>&gt; 산재사고로 인정받을 경우,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민사상)배상책임을 보장</li><li>실습기관의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못 받을 경우, 위 “실습생의 배상책임”에서 담보</li></ul>
실습중 상해사고 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실습중 = 산재보험 근로시간 즉,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등은 실습중으로 인정합니다.</li><li>1천만원 한도로 입원/통원/약값 보상.</li><li>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장 받았다 하더라도 별도로 보험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li></ul>

## 4. 상품과 연관된 주요 법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 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중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 현장 실습생은 제 5 조제 2 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개정 2010. 6. 4.>
-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 36 조제 1 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0. 5. 20.>
- ③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 ④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민법 제5장 불법행위

#### 제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 756 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 ③ 전 2 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자주 묻는 질문

### Question.01

**보험가입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없이  
보험에 가입하는데 보상에 문제가 없나요?**

보상처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습기관의 출석부 및 대학교 현장실습 전산에서 ‘참여학생정보 화면 캡처’)

유사한 다른 보험의 사례로는,

대학교가 재학생의 학교생활 중 사고를 보장해주는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에서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없이 보험가입 시점의 재학생수를 기준으로 보험가입 합니다. 단, 사고발생시에는 재학증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Question.02

**실습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해야 할 경우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학생 개개인의 사유로 실습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보험료를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단, 이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자연재해 등으로 학과 전체가 실습을 중단하는 경우 또는 합리적 이유로 학과 전체의 실습이 중단 취소되는 경우에는 보험을 해지하고 해지에 따른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유사한 다른 보험의 사례로는,

대학교가 재학생의 학교생활 중 사고를 보장해주는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에서도 중도 휴학, 퇴학 등의 학업중단 상황이 발생해도 개개인의 사유에 따른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 5. 자주 묻는 질문

### Question.03

#### 보험가입 후 실습생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보험에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보험가입시 대학교는 ‘학과별 인원수 현황’을 제출합니다.

추가로 실습을 나가게 된 학생이 기 제출한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라면 보상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즉, 기 제출한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 3명 이내로 추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학과의 학생이라면 반드시 추가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Question.04

#### 보험기간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보험 가입기간은 최초 현장실습 시작일부터 최종 현장실습 종료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위 보험기간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험료는 실습 기간별 참여인원을 기준(기간별 1인당 보험료)으로 산정됩니다.  
(예, 4주 20명, 8주 30명…)

이처럼 보험기간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험기간 설정 할 때 보험종료일은 예상되는 학생의 실습 종료일자가 예상보다 1~2 주일 정도는 더 여유 있게 설정하는게 좋겠습니다.

### Question.05

#### 현장실습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학과가 있습니까?

아래의 학과는 현장실습보험에 가입이 제한됩니다.

- ① 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 ② 철도 및 항공종사관련 : 조종사, 기관사, 항공사, 정비사
- ③ 해양수관련 :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 ④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사

나머지 학과는 모두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Question.06

####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실손보험)이 있어도 현장실습보험 치료비와 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실습중 상해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부담 치료비에 대해서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는 별도로 이 보험에서 보장하는 치료비 보장을 별도(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상해보험이나 공제상품처럼 비례보상 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하여 추가 보장하는 이유는 보험상품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 5. 자주 묻는 질문

### Question.07

이 상품은 실습 중 사망시 실습기관과의 과실비율을 따져서 실습기관의 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액 만큼을 보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습중 상해사망 보험을 별도 가입할 수 없나요 ?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이경우 학생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소속 학과정보를 저희 쪽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해주신 자료를 근거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추가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 Question.08

기존 단체상해보험 또는 학생실습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단체상해보험에서는 사망 및 후유장해 그리고 치료비를 보장받았고, 학생실습보험에서는 사망 및 후유장해 그리고 실습생의 과실로 인해 실습기관에 피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보장하는 배상책임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가장 큰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대부분의 대학들이 위의 단체상해보험(공제포함), 학생실습보험에 가입했었고, 현재도 가입중인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이 “실습기관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상품이 개발된 것 입니다.

18.9.11 대학생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가입 의무화가법으로 강제화 된 이유도 “실습기관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최소한이라도 법으로 강제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에 가입하던 단체상해보험, 실습보험의 사망보험금 등은 민사상 배상책임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실습중 발생하는 사망, 후유장해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5. 자주 묻는 질문

### Question.09

#### 산재보험에서 실습중 사고에 대해서 보장해주는지 이 보험에 추가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래의 사유로 보험가입이 꼭 필요합니다.

**첫째,** 산재보험에서 제외되는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의 실습수업 등은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이 보험에서 보상합니다.

**둘째,** 산재보험은

- 위자료(1억원 한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휴업으로 인해 취업을 못할 경우 평균임의 70% 수준 보장
- 장해가 발생했을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장해 급수에 따른 금액산정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충분하다 할 수 없음.
- 치료비에 대해 요양급여에서 지급되는데, 비급여 항목은 보상에서 제외
  - ▶ 위자료, 휴업급여의 차액, 장해연금의 차액 및 요양급여 중 비급여항목 등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현장실습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상해보험 및 학생실습보험 보장은 위 산재보험에서 제외되는 차액 등을 보장하거나 및 대체할 수 없음)

**셋째,** 산재사고 발생시 피해당사자(학생) 및 가족 그리고 사망시 유족 등은 산재보상 외에 추가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추가 피해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근거:민사상 배상책임)을 청구

- 대부분의 실습기관들은 산재보험 외에 이러한 추가 피해보상 및 법적 소송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피해자 측의 요구에 해당 대학교도 사고 책임의 당사자로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 경우 현장실습보험은 실습기관이 책임져야하는 산재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해주고, 합의를 하면서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적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이 보험에서 보상하며, 판사가 결정한 판결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면서 사건을 종결합니다.

※ 대기업, 건설회사, 선박회사 등은 근로자의 산재사고시  
추가 피해보상에 대비하기 위해 근재보험을 반드시 추가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근재보험의 보장내용이 이 보험의 배상책임과 동일함.